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746호 2010. 2. 24.(수)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217호 공시송달 공고 ----- 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218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소매인 신청 공고 ---- 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219호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 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221호 도시계획시설 [공원:원신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입안에 관한 공고 ----- 1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245호 토지사용통지공고 ----- 1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251호 대부업자 등록취소 공고 ----- 1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252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소매인 신청 공고 ---- 19

기 타

-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0-32호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신조 직인
공고 ----- 20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032-560-4140]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217호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루원시티(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제3차, 제4차, 제5차, 제14차 수용재결과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서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해당서류가 반송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수용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2. 사업자성명 :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3. 송달할 서류 : 재결서 정본(수용재결 제3차, 제4차, 제5차, 제14차)
 4. 공 고 기 간 : 2010. 02. 18 ~ 2010. 03. 05.
 5. 공고대상자 : “붙임” 대상자 명단 참조
 6. 재결서 교부 및 문의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032-560-5902)
- ※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010. 2. 18.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재결서정보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연번	대상자	재결차수	재결일자	재결서 발송주소	대상구분
1	최화순	3차	'09.11.05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284-338(14/3) 개나리아파트 5-103	소유자
2	전상주	3차	'09.11.05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산83(6/1) 경일아파트 C동 406호	소유자
3	지영남	3차	'09.11.05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산84-11(14/5) 개나리아파트 6동 604호	소유자
4	박경순	3차	'09.11.05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60-1(3/3) 주공아파트 5동 311호	소유자
5	조기연	4차	'10.01.14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284-338 (13/2) 개나리아파트 2동 407호	소유자
6	윤영진	4차	'10.01.14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834-5 104호	관계인
7	최명희	4차	'10.01.14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369 (11/1) 한국아파트 101동 102호	소유자
8	조은희	4차	'10.01.14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284-338 개나리아파트 4-107	소유자
9	최양태	4차	'10.01.14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284-338 개나리아파트 4동 401호	소유자
10	이재결	4차	'10.01.14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284-337(16/3) 개나리아파트 8동 604호	소유자
11	최이희	4차	'10.01.14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284-338 개나리아파트 4동 620호	소유자
12	윤영규	4차	'10.01.14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284-338 개나리아파트 4동 419호	소유자
13	한영수	4차	'10.01.14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284-337(17/1) 개나리아파트 9동 502호	소유자

□ 재결서정본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연번	대상자	재결차수	재결일자	재결서 발송주소	대상구분
14	고정애	5차	'10.01.14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151-3 효성아파트 103-1104	소유자
15	강세환	5차	'10.01.14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17	소유자
16	김명한	5차	'10.01.1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17-21 청구빌라 에이-비02(9/4)	소유자
17	이규익	5차	'10.01.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534-122 2층동 201호	소유자
18	임종국	5차	'10.01.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68(20/3) 건영아파트 나동 308호	소유자
19	김성호	14차	'09.11.05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73 신반포2지구아파트 106-1004	관계인
20	주식회사 기은상호 신용금고	14차	'09.11.05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846-4 안양지점	관계인
21	손인규	14차	'09.11.05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1가 13(8/2)	소유자
22	유의환	14차	'09.11.05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덕흥리 661-1(5/1)	소유자
23	번지숙	14차	'09.11.05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60번지 18호 동아파크타운 110동 202호	관계인
24	조규선	14차	'09.11.05	미상	소유자
25	청솔건설 주식회사	14차	'09.11.05	미상	소유자
26	한송건설 주식회사	14차	'09.11.05	미상	소유자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218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소매인 신청 공고

1.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담배사업법 폐업사항에 대하여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며.

상호	소재지	성명	구분	폐업일
늘푸른마트	인천 서구 심곡동 259-4 극동아파트상가 1동102호103호	선정숙	일반	2010.02.17

2. 이에 따른 인근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받고자,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소매인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아래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10.02. 17 - 2010. 02. 24

나. 접수 및 문의처 : 서구청 지역경제과 (☎560-4434)

다. 접수서류

- 1)소매인지정신청서
-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3)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4)건물등기부등본사본 1부
- 5)우선지정 자격증명 서류(장애인, 국가유공자 증명서류)1부.
- 동일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라. 참고사항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6항)

- 1)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2)신청자 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 우선지정
- 3)우선지정신청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2010. 02.17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219호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취지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함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의 목적에 대한 내용
-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와 구성에 대한 근거 마련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따른 구성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복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근거 마련
- 직장 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설치된 운동경기부의 전반적인 운영·관리에 따른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문화관광체육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560-413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직장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직장운동경기부의 우수한 경기력을 통하여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체육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운영·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운동경기부”라 한다)에는 “여자 인라인롤러부”를 설치한다.

② 운동경기부는 감독과 선수로 구성하며, 감독과 선수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임용권자)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독 및 선수의 임명·징계·면직 등을 행사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감독 및 선수의 임명·징계·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임용자격) ① 감독 및 선수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감독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해당 종목 “2급 이상 경기 지도자” 중에서 구청장이 추천한 자와 가맹경기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임용한다.

③ 선수는 해당 학교장 또는 가맹경기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임용한다.

제5조(복무 및 훈련) ① 감독 및 선수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② 선수의 훈련은 합숙 훈련과 비합숙 훈련으로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무) 감독 및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 감독 및 선수는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체육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의 향상에 노력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품위유지의 의무 : 감독 및 선수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복종의 의무 : 감독 및 선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4. 기타 :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 금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대회출전) 운동경기부가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보수) 감독 및 선수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제9조(실비보상) 감독 및 선수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회참가·전지훈련·우수선수 유치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여비 등의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0조(보상금 등) 구청장은 우수선수를 유치하기 위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수 유치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감독 및 선수가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격려하기 위해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퇴직금) 감독 및 선수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을 「공무원연금법」 제48조에 따라 지급한다.

제12조(신분 및 권익보장) 구청장은 감독 및 선수의 신분 및 권익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3조(의료지원) 구청장은 감독 및 선수의 훈련 또는 경기 중 질병, 부상, 사망 또는 재해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제3조에 따른 감독 및 선수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기능·조직·운영 및 회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된 운동경기부는 이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본문 중 “제4조”를 “제13조”로 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221호

도시계획시설 [공원:원신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입안에 관한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산34-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원신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입안에 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02. 19.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공원조성계획 입안 내용

□ 공원 개요

- 명 칭 : 도시계획시설(공원:원신근린공원)
- 시설의 종류 : 도시공원(근린공원)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산34-1번지 일원
- 면 적 : 176,187m²
- 시설결정 : 1966. 8. 31(건교부 고시 제2701호)

□ 입안사유

- 쾌적한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녹지 공간 조성
- 여가공간의 양적, 질적 수준향상 및 도시의 기능과 미관의 향상
- 실내식물원 도입으로 교육공간 및 문화의 장을 제공함은 물론 서구만의 특색있는 공원 조성

□ 조성계획 입안(안)

○ 원신근린공원

구분	법정면적(m ²)	적용면적(m ²)	비율(%)	검 토 결 과
공원면적	176,187			
시설면적	70,474.8	45,136.3	25.63	법규 가능범위내 계획(법정 40%이하)
건 폐 율	17,618.7	7,207.6	4.1	법규 가능범위내 계획(법정 10%이하)

○ 주요도입시설: 청소년수련관, 게이트볼장, 식물원, 야영장, 폭포,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등

※ 공원조성계획 조서 및 도면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 참조)

2.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녹지경관과 ☎ 560-4800)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245호

토 지 사 용 통 지 공 고

토 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	①성명	국(국방부)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토지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⑤지번	산21-1	⑥지목	임	⑦면적 (m ²)	65,983
⑧사 용 기 간	2010.2~2010.5월	⑨사 용 목 적	사방댐				
⑩ 자재채취수량 및 사용면적	⑪구 분	⑫종 류	⑬수량 및 면적 (m ²)	⑭적 요			
		사방댐	1,481				

「사방사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방사업 시행에 필요한 측량의 장애물 제거소요자재의 채취사용함을 통지합니다.

2010년 02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

※ 때·토석 등 자재채취 및 가도로 사용한 적지는 원상회복이 되도록 필요한 작업을 합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245호

토 지 사 용 통 지 공 고

토 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	①성명	국(산림청)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토지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⑤지번	산1-1	⑥지목	임	⑦면적 (m ²)	54,637
⑧사 용 기 간	2010.2~2010.5월		⑨사 용 목 적		사방댐			
⑩ 자재채취수량 및 사용면적	⑪구 분		⑫종 류		⑬수량 및 면적 (m ²)		⑭적 요	
			사방댐		323			

「사방사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방사업 시행에 필요한 측량의 장애물 제거소요자재의 채취사용함을 통지합니다.

2010년 02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

※ 때·토석 등 자재채취 및 가도로 사용한 적지는 원상회복이 되도록 필요한 작업을 합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245호

토 지 사 용 통 지 공 고

토 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	①성명	국(재정경제부)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토지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⑤지번	산1-12 111-14	⑥지목	임 전	⑦면적 (㎡)	1,052 12,529
⑧사 용 기 간	2010.2~2010.5월	⑨사 용 목 적	사방댐				
⑩ 자재채취수량 및 사용면적	⑪구 분	⑫종 류	⑬수량 및 면적 (㎡)		⑭적 요		
		사방댐	17(산1-12번지내) 126(111-14번지내)				

「사방사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방사업
시행에 필요한 측량의 장애물 제거소요자재의 채취사용함을 통지합니다.

2010년 02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

※ 때·토석 등 자재채취 및 가도로 사용한 적지는 원상회복이 되도록 필요한
작업을 합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245호

토 지 사 용 통 지 공 고

토 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	①성명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토지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⑤지번	산2-1	⑥지목	임	⑦면적 (m ²)	23,134
⑧사 용 기 간	2010.2~2010.5월		⑨사 용 목 적		사방댐			
⑩ 자재채취수량 및 사용면적	⑪구 분		⑫종 류		⑬수량 및 면적 (m ²)		⑭적 요	
			사방댐		50			

「사방사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방사업 시행에 필요한 측량의 장애물 제거소요자재의 채취사용함을 통지합니다.

2010년 02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

※ 때·토석 등 자재채취 및 가도로 사용한 적지는 원상회복이 되도록 필요한 작업을 합니다.

토지사용통지서 발급조서

2010.02.

일련 번호	발급 일자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토 지 소 재 지						사용기간	사용목적	작업내용	면적및 수 량 (㎡)	비고
		주 소	성 명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지목	지적 (㎡)					
1		국(국방부)		인천	서구	가정동	산21-1	임	65,983	2010.2 ~5월	사방댐		1,481	
2		국(산림청)		인천	서구	석남동	산1-1	임	54,637	2010.2 ~5월	사방댐		323	
3		국(재정경제부)		인천	서구	석남동	산1-12	임	1,052	2010.2 ~5월	사방댐		17	
4		국(재정경제부)		인천	서구	석남동	111-14	전	12,529	2010.2 ~5월	사방댐		126	
5		인천광역시 (소관청 상수도사업본부)		인천	서구	석남동	산2-1	임	23,134	2010.2 ~5월	사방댐		50	
		계											1,997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251호

대부업자 등록취소 공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의 규정에 의거 대부업등록(2009.05.12) 후 등록증 미교부 및 제6차 실태조사 미제출 등의 사유로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대부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02. 23.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공고의 명칭 : 대부업자 등록취소 공고
2. 등록취소일자 : 2010. 02. 23.
3. 등록취소대상 : 1개소

등록번호	업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인천서구2009-17	JC대부	인천서구 불로동 길훈@ 307동 1704호	노용호	781116- 1-----

4. 처 분 이 유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3조제2항 제2호 및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동법3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부여 의견제출기한(2010.02.20.)내에 의견 미제출로 인하여 등록 취소함.

5. 근 거 법 령 : 대부업법 제13조제2항

6. 행정처분내용 : 대부업자 등록취소

- 직권등록 취소된 대부업자는 향후 5년간 대부업 등록(영업)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서구청 지역경제과(032-560-44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252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소매인 신청 공고

1.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담배사업법 폐업사항에 대하여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며.

상호	소재지	성명	구분	폐업일
한라매점	인천 서구 경서동 청라지구 A6블럭	김범석	일반	2010.02.23

2. 이에 따른 인근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받고자,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소매인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아래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10.02. 23 - 2010. 03. 03

나. 접수 및 문의처 : 서구청 지역경제과 (☎560-4434)

다. 접수서류

- 1)소매인지정신청서
 -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3)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4)건물등기부등본사본 1부
 - 5)우선지정 자격증명 서류(장애인, 국가유공자 증명서류)1부.
 - 동일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 라. 참고사항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6항)
- 1)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2)신청자 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 우선지정
 - 3)우선지정신청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2010. 02.23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0-32호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신조 직인 공고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직인관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조한 직인의 인영을 동규정 제7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02. 18.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공단직인 신조 사유

- 지방공기업법 개정(2009.4.1) 및 동법시행령 개정(2009.9.21) · 시행에 따른 공단직인관리규정 일부 개정(2010.2.1)에 따른 공단직인 신조

2. 신조직인의 최초 사용일 : 2010. 02. 01

3. 신조직인명 및 인영 : “별첨참조”

신조 직인인영

신조 직인명	신조 직인 인영	규 격 (단위 : mm)	비 고
인천광역시서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인		24×24 (전서체)	공단직인 관리규정 개정
인천광역시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회의장인		24×24 (전서체)	공단직인 관리규정 개정
인천광역시서구 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24×24 (전서체)	공단직인 관리규정 개정